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○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7. 3. 6. **제 천 시 장**

○ 회 부 일 : 2007. 3. 7

○ 상 정 일 : 2007. 3. 13(제1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)

가. 제안이유

○ 청풍의 관광레포츠시설물 중 번지점프장의 시설물 이용료를 개인 35,000원에서 40,000원으로 인상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이용료 조정안

관광레포츠 시설물 이용료(번지점프장)

구 분	번 지 점 프		비 고
	기 준	인 상	
개인	35,000	40,000	빅스윙(20,000원) 변동 없음 이젝션시트(20,000원) "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동수)

【 法的檢討 】

○ 지방자치법 제127조(사용료)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

법 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에서도 사용료 ·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2002년 12월 20일 조례 제575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제8조(이용료 및 이용시간)의 별표3중 이용료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며,

○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6년 11월 17일 입법예고 하였으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.

【 行政的檢討 】

○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가 건립한 번지점프장과 인공암벽장은 2002년 관리운영조례 제정시 번지점프장 이용료를 35,000원으로 한후 현재까지 인상치 않았으며,

○ 본 시설물(번지점프장 · 인공암벽장)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따라서 현재까지 위탁업체의 관리운영 및 재정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특히, 이용객 현황과 이용료를 40,000원으로 인상시 이용자수의 감소 염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세밀히 검토하시기 바람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○ 번지점프장 이용료에 대한 타지역과 비교분석한 사례와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 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은?(김병창 의원)

○ 5천원 인상한다 하더라도 흑자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굳이 인상하려는 이유는?(김명섭의원)

나. 답변요지 <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>

○ 강원도 인제는 63m로 40,000원을 받고 있고 청풍의 번지점프장은

62m로 35,000원임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며, 5,000원 상승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수익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

○ 성수기때 번지점프장 이용료를 5천원 인상하는 대신 할인은 비수기 때 많이 해주고자 함.

5. 소 수 의 견

" 없 음 "

6. 토 론 요 지

" 없 음 "

7. 심 사 결 과

" 원 안 가 결 "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○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